

대규모기업집단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협회는 지난 6월 27일 연세빌딩 국제회의실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6월 2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수도권 지역 공정거래 모니터요원 및 소비자단체 모니터요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동 교육에는 2001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77개 업체 임직원 101명과 공정거래 모니터요원 및 5개 소비자단체 모니터요원 55명이 참석하였다. 대

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임기성 사무관, 기업집단과 채규하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경제력집중억제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력집중억제원칙의 틀 내에서 지주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고 밝혔다. 특히 지주회사의 신고의무에 관하여 지난 3월 27일 동 법 시행령 부칙의 개정으로 현재 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금년 7월 31일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가운데 신규 지정된 6개 기업집단을 제외하고는 채무보증이 거의 해소되었고 계열사 간 상호출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정·재계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재계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인정범위를 보완·확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질의 및 응답

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이 기업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은 무엇인지?

답] 동일인·주력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인의 현물출자를 유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기존 회사의 분사화를

통하여 특정 사업부문의 매각, 외국인 투자유치, 자회사별 책임경영체제 등 구조조정에 지주회사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나 상법상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하는 경우는 양도 시점에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있다.

- 문) 신규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경우, 신규 지정 당시 출자 총액이 30%이었다가 이후에 35%로 증가하더라도 해소 유예기간 1년간은 법 위반이 아닌지?
답)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 초과 출자의 해소 유예기간(1년)이 끝나기 전이라도 신규 지정 당시의 출자 총액인 30%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의해 법 위반이 되므로 유념하길 바란다.
- 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IV. 중점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문제는 생기지 않는지?
답) 중점심사대상이라는 것은 중요심사대상만 정해 놓은 것이며 중점심사대상의 해당여부가 법 위반 여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문) 신규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된 경우 지정되기 이전의 부당한 지원행위는 면책되는 것인지?
답)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행위라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 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가 실무자의 착오로 늦어지게 된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법 위반이라면 정상 참작 사항으로 고려될 수는 있는지?
답) 일단 법 위반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가 아닌 실무상의 착오인 경우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
- 문) 계속해서 출자한도액(25%)을 넘지 않다가 사업년도 종료일 직전에 환율변동으로 외화부채가 많은 A기업의 경우 순자산의 감소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였다면 이 때도 법 위반인지?
답) 순자산이 감소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10조제4항에 의해 순자산 감소일부터 2년간은 순자산 감소일 현재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법 위반이 아니다.

하도급관련업체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협회는 7월 10일 및 12, 13일 3일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건설 및 제조업체 총 254개 업체 315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에는 하도급1

과의 박재규 서기관, 하도급2과의 안병주 사무관, 하도급기획과의 김만환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되었다. 강사들은 금년 하도급정책에 대하여 3년째 계속하여 실시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자진시정조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는 사실대로 서면실태조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재 현금결제수단으로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기업구매금융제도 등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하도급법상 별점 감점 및 과징금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 감면 등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기업들에게는 과징금 부과시 산출된 과징금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100% 현금결제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행의 하도급대금 지급지급제도를 개선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건설산업구조 등 건설 전 분야에 있어서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 규제 및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약관 등 각종 불공정관행을 발굴하여 일괄 개선할 예정이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대폭 확대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를 방지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가 원기에 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첨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질의 및 응답

- 문] L/C 등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영세성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용장 개설을 거부한 경우나 수급사업자가 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를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답]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할 경우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계약서 등 기타의 문건 등으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문]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도급물품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합격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사실 제조업체의 경우 대량 발주로 인해 일일이 검사를 할 수 없고 다만 샘플링검사를 통한 결과만 통지하게 된다. 그러나 사후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량품이 발생 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있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 답] 원칙적으로 물품을 검수하는 기간은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그러나 샘플링검사만으로 검수하여야 하는 경우, 검사 이후 불량품 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 재경부고시에 의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명백하게 수급사업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증명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등에 손해배상 등 규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문] 카드구매결제제도가 현금과 같다고 한다면 카드결제도 어음과 같이 결제기간이 60일 이후나 90일 등 현금보다는 미래에 현금성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 답] 기업구매카드 제도의 흐름은 예컨데 A(원사업자)기업이 B(수급사업자)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는다고 할 경우, 먼저 A기업은 거래처를 둔 C은행과 기업구매카드 계약을 체결, 구매카드회원으로 가입하면 C은행은 A기업의 납품업체인 B기업을 가맹점으로 가입시키고 약정을 체결한다. 이후 B가 A에게 납품을 하면 A는 B에게 어음 대신 카드결제를 해주고 납품내역을 C은행에 전산으로 통보하면, 은행은 통보 받은 즉시 어음할인 금리를 적용해 수수료를 공제한 뒤 B의 통장에 대금을 납입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 상환청구권 또는 소급권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나 카드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은행이나 카드사에 대해 대금을 입금하는 시기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있게 되므로 자금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구매카드 가맹점 업체들은 종전에 50~60일 걸리던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2~3일로 단축되어 현금흐름이 개선되므로 현금에 준하여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 문]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수급사업자이다. 발주처의 부도로 각 관계사들이 철수한 시점이 3년 전, 1998년 5월 31일이다. 그렇다면 금년 5월로 공사타절 시점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것이 되는데 그 동안 원사업자측에 계속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면 심사개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답] 공사를 중단한 상황과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으나 정상적으로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것이라면, 본 사안은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명백하게 3년이 경과가 되었으므로 하도급법 제23조에 의해 조사기간 경과로서 심사개시 될 수 없다.**
- 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기압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 답]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압류 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하도급법 제14조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전된 것이므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직접지급 사유 발생 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기압류한 경우, 동 기압류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기압류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기압류 등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한다.**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안내』

본 협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 각종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출간하였다.

'97년, '9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법(2001. 1. 16. 개정)과 동 시행령(2001. 3. 27. 개정), 하도급법, 약관법(2001. 3. 20. 개정), 표시광고법, 카르텔일괄정리법 등 공정거래관련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제·개정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법률과 시행령 및 관계법령과 해당 심결사례를 연계시킴으로써 법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거래법규집의 판매가는 30,000원(비회원사 40,000원)이며,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에 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조사부(☎775-8870~2)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관련법규집 목차 안내

I. 公正去來法

1.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2001. 1. 16. 개정>및시행령<2001. 3. 27. 개정>
2. 告示 · 指針 등
 - 1) 市場支配的地位濫用行爲의審查基準<2000. 9. 8. 제정>
 - 2) 企業結合의申告要領
 - 3) 企業結合審查基準
 - 4) 持株會社關聯規程에 관한解釋指針<2001. 5. 2. 개정>
 - 5) 持株會社의設立 · 轉換의申告및持株會社의株式所有現況등의報告에 관한要領<2001. 5. 개정>
 - 6) 企業結合申告規定違反事件에 대한過怠料賦課基準

- 7) 企業結合關聯是正措置不履行에따른履行強制金賦課基準<2000. 12. 23. 제정>
- 8) 共同行爲및競爭制限行爲의認可申請要領
- 9) 入札秩序公正化에 관한指針
- 10) 事業者團體活動指針
- 11) 大規模小賣店業에 있어서特定不公正去來行爲의類型및基準指定告示
- 12) 景品類提供에 관한不公正去來行爲類型및基準<2000. 4. 25. 개정>
- 13) 並行輸入에 있어서의不公正去來行爲의類型告示
- 14)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不公正去來行爲의基準指定告示
- 15) 大規模企業集團의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한審查基準

- 16) 不當한支援行爲의審查指針
- 17) 大規模內部去來에 대한理事會議決 및 공示에 관한規程<2000. 4. 1. 제정>
- 18) 國際契約上의不公正去來行爲등의類型 및 基準
- 19) 國際契約審查要請要領
- 20) 公正去來委員會會議運營및事件節次 등에 관한規則<2000. 12. 5. 개정>
- 21) 法違反事實의公表에 관한運營指針 <2000. 6. 13. 개정>
- 22)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등에의 한利害關係人등에 대한經費支給規程
- 23) 過徵金賦課細部基準등에 관한告示
- 24) 滯納過徵金에 대한加算金料率告示
- 25)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違反行爲의告發에 관한公正去來委員會의指針
- 26) 公正去來委員會訴訟事件受任辯護士報酬規程
- 27) 還給過徵金에 대한加算金料率告示 <2001. 3. 27. 제정>
- 28) 知的財產權의不當한行使에 대한指針 <2000. 8. 30. 제정>

II. 下都給法

1.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法律 및 施行令
2. 告示 · 指針 등
 - 1) 어음에의한下都給代金支給時의割引率告示<2000. 5. 23. 개정>
 - 2) 製造委託의對象이되는物品의範圍告示
 - 3) 先給金等遲延支給時의遲延利子率告示
 - 4) 建設下都給代金支給保證免除對象告示 <2000. 10. 13. 개정>
 - 5) 下都給去來公正化指針<2000. 3. 29. 개정>
 - 6) 下都給法違反事業者에 대한過徵金賦課指針

III. 約款規制法

1. 約款의規制에 관한法律

IV. 表示 · 廣告法

1. 表示 · 廣告의公正化에 관한法律 및 施行令
2. 告示 · 指針 등

- 1) 不當한表示 · 廣告行爲의類型및基準指定告示
- 2) 注油所등石油販賣業에 있어서의供給者表示에 관한不公正去來行爲의類型및基準
- 3) 住宅의表示 · 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4) 環境關聯表示 · 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5) 商街등의分讓및賃貸表示 · 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6) 銀行등의金融商品表示 · 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7) 保險商品表示 · 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8) 受賞 · 認證등의表示 · 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9) 通信販賣表示 · 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10) 廣告實證에 관한運營指針<20000. 12. 22. 개정>
- 11) 臨時中止命令에 관한運營指針
- 12) 重要한表示 · 廣告事項告示<2001. 5. 2. 개정>
- 13) 電子去來消費者保護指針<2000. 1. 6. 제정>
- 14) 訂正廣告에 관한運營指針<2000. 12. 22. 제정>
- 15) 消費者被害一括救濟에 관한運營指針 <2001. 3. 31. 제정>

V.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의 적용 제외되는부당한共同行爲등의整備에 관한法律

VI. 訪問販賣등에 관한法律 및 施行令

VII. 割賦去來에 관한法律 및 施行令

VIII. 公正去來委員會運營

1. 公正去來委員會職制<2000. 2. 28. 개정>
2. 公正去來委員會職制施行規則<2000. 5. 19. 개정>
3. 公正去來委員會委任專決規程<2000. 11. 15. 개정>
4. 地方事務所業務處理指針
5. 公正去來委員會所屬公務員人事管理規程